

공고

기안용지

분류기호 **보안 148.1.2** (전화번호 **21**) 전결규정 **10조 3) 호**
문서번호 **국장 전결사항**

처리기한 기안자 **보건과** 결재자 **보사국장**
시행일자 **1969. 9. 6** 이정부 (개의출장중) **국장**
보존년한 기안일자 **69. 8. 26** 결재일자 **9월 6일**

보조 **보건과장** (인) **국장** (인)
기 **위생계장** (인) **국장** (인)
관 **관** (인) **국장** (인)
협 **관** (인) **국장** (인)

국장 (인) **국장** (인) **국장** (인) **국장** (인) **국장** (인)

유신조 **각안참조** (인)
무 **1969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지적시험 실시** (인)
과대장정리 (인) **국장** (인)

(제 1호 개별결재)
1. 69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지적 시험을 이용사 및 미용사 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보건사회부 내부 제24호 이용사 및 미용사 지적 시험 규정과 보건 14388.6-2426(69. 8. 18) 자 이 이용사 지적 시험 실시에 따른 지시에 의거하여 2월과 같이 실시코자 함입니다.
2. 실시 2월 별첨 계획의와 같음

(시립잠성직업보도원제품)

145

~~145~~

서울특별시

116

2. 동 자적 시험 소모예산 집행은 자적 시험 소모
 용후 리원자의 수에 따라 기호 신을 계획이
 집행로서 하도
 3. 본 자적 시험 실시 용후에 소모되는 신부 공구 등은
 계획에 의한 공구비와 같이 지출코려 한다.
 부 시험실의 계획다. 끝

(제 2안 보사부 보안)
 신 보사 아회 부장관
 참 조 환경 기생 과장
 제 목 등 간

1. 당시 69년도 이.미용사 자적 시험을 별첨공문
 과 같이 실시케 되었기 보로 합니다.
 첨부 공문은 1부 끝
 (제 3안 각기도에 대한 동보)
 수 신 수 신 처 참 조
 제 목 등 간

1. 당시 69년도 이.미용사 및 미용사 자적 시험을
 별첨 공문과 같이 실시 하도니 귀관하에 주의를
 다수 응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문은 1부 끝
 수 신 처

가 2-11
 (제 4안 각보전소에 대한 동보)
 수 신 수 신 처 참 조
 제 목 등 간

1. 당시 69년도 이.미용사.미.미용사. 자적 시험
 19-2 117

을 별첨과 같이 (공고문) 실시 해 귀도 관내 이
 회의 주지 시켜 대수 응시 조후 할것이며
 2. 관이 이동 업도에 의하여 인두를 철저하
 실시 관에 우직적 자는 금번 자적 시험이 전원 응시
 조후 조치 하고

9.6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3. 자적 시험 응시자들의 종업원 확인증 신청
 았을시 이는 종업원 신고 외장과 대조후 별첨 확인증
 사식이 외기 인두 발급 조후 할것

4. 기타 동 자적 시험 구비 서류에 첨부된 진광
 관에서 응을 인두 발급 조후 하며 시험 응시 미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할것

- 첨 부 1. 공고문 1부. 2. 응시 원서 서위 1부
 3. 학원 수료책인 서위 1부. 종업원 확인증 서위 1부

수 신 서사 22-70.

(제5안 당해 협회미 제한 종료)

수 신 수 신 처 합조

제 목 동 전

1. 영시 69 번도 이동사 및 이동사 자적 시험을
 공고문 제공과 같이 실시 해 귀 협회 산하
 회의 주지 시켜 대수 응시 조후 조후
 하며 주지 시켜 바랍니다.

- 부 1. 공고문 2. 응시 원서 서위.
 3. 학원 수료 확인증 서위 1부
 4. 종업원 확인증 서위 1부.

수 신 처

대한 이봉사회 서울시 지부장
대한 이봉사회 "

(제 6인 보도 의뢰)

수신 공보실장

제 목 이.비봉사 자적시험 실시에 따른 보도의뢰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 하오니 신문 또는 방송을
동하여 널리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공고문 1부

(제 1인 시험장 사정 승락 요청)

수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이.비봉 자적 시험장 사정 승락 요청
1. 금번 당사에서 별첨 공고문과 같이 69년도
이.비봉사 자적 시험을 실시 하오나 동시험 장소로
제교를 사용코자 하오니 연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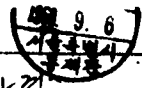
2.본건 승락 여부를 조속 회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cc.

첨 부 공고문 1부 글
수신 취

- 1) 동국대학교 총장 친로 ~~신용부~~ 과장
취외시련인시 69. 10. 15 (일) 인내교실 20 개교실
- 2) 경희여자기술고등 학교장
장기시련 69. 10. 20 ~ 22 69. 10. 27 ~ 31
인내교실 4 개교실





1969년도 이공사 및 미공사 자격 시험 실시 계획서

1. 시험종별

- ㄱ. 이공사 자격 시험
- ㄴ. 미공사 자격 시험

2. 시험일지

가. 이공사 자격 시험

나) 학과 시험

1969. 10. 5. (1일간)

ㄴ) 이공사 실기 시험

1969. 10. 20. ~ 10. 22. (3일간)

ㄷ) 미공사 실기 시험

1969. 10. 29 ~ 10. 31 (3일간)

3. 시험장소 (학과 및 실기)

가. 이. 미공사 자격 시험은 각종 기술분야를 다루는 시험인 만큼 이에 소요되는 제반 시설의 완충을 위하여 1,000 여 명의 응시자들을 수용할 수 있고 시야 중앙 지대 (교동원리) 에 위치 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을 별도 사용 능력을 양어 사용 고려 함

나. 시험장소로 사용코자 하는 시설물

ㄱ) 소재지 및 명칭 (예정)

나) 중구 범선동 1~8 정화 여자 고등 기술 학교

400명 수용 가능

ㄴ) 이. 미공기공 실기 시험 장소

143 17-5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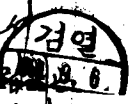
4. 합격자 발표 및 장소
가. 학과 시험 결과
1969. 10. 17 (예정) 당시 추정에 게시
나. 실기 시험 결과
1969. 11. 5 (예정) 당시 추정에 게시

5. 시험 과목
- 가. 이.미용사 학과 시험 (이용 미용 공통)
 - 1) 위생법규
 - 2) 소독법
 - 3) 공통 위생학
 - 4) 평의 피부학 (피부과학 포함)
 - 5) 문화 및 화학 (화장품 화학 및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부분에 한관과)
 - 6) 이용 또는 미용 이론 (이용사는 이용이론 미용사는 미용이론)

- 나. 이.미용사 실기 시험
- 1) 이용 또는 미용의 기초적 기술 (조발 면도 미용사는 이이용 샴핑 화장)
 - 2) 소독약의 취급 (이 미용 공통)
 - 3) 위생상거 조치 (")

6. 응시 자격

가. 국민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사실 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봉주정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까지
응부를 위한 이용 또는 미용 학원(이하 6개
19-6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고 영입 검정 시험
을 받은 이.비공 영도 이다 (6개월 이상 ^{중상} ^{후계}
한자

나. 국민 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영입 장소 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자.

과. 원시 시험 응시 자격은 위의 시험이 합격 한자로
한자.

7. 응시 원서 구비 서류

- 1) 응시 원서 1통 (소정 서식)
- 2) 이력서 1통
- 3) 보건소장 발행 의 건강 진단서 1통
- 4) 졸업원 확인증 1통 (소정 서식)
- 5) 국민 수호자 이 있어서는 수호 확인증 1통
- 6) 사진 (소명함판 4매) (소정 서식)
(6개월 이내 할로 정면으로 촬영한 것)
- 7) 학력 초본 또는 국민 등록증
- 8) 수수료 200원 (서울특별시 수납증지 첨부함)

8. 응시 원서 접수기간

과. 이.비공사 자취 시험 응시 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1) 접수기간 16
1969. 9. ~~22~~ ~ 9. 24 까지 공휴일 제외

9. 기타

제출된 응시 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원~~
응시 자는 실기 시험 실시상 모험 관계가 ~~있~~

1969 11-1 ~~11~~

응시 15일 전부터 조별치 맡것을 **신변에**
 철수 시에 주리 시킨다.

10. 시험 위원회 구성 및 위촉
- 가. 이용사 및 비용사 자취 시험 규정 (보수부
 예규 제25호) 에 의거 이. 비용사 자취시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 나. 국외 시험 및 실기 시험 위원 위촉은 별도
 위촉한다.
 - 다. 시험 위원회 구성.

부 사. 위원명. 위촉.

위원장 보진사회국장

부위원장. 보진과장.

간 사 위생계장

국외 시험위원 **과목장 2명** (보 12명) 별도 위촉

실기 시험위원 **이용 2명** 별도 위촉
 서 기 보진과 위생계위원

직 무

1. 위원장은 시험기간중 위원
 과 관계 직권을 지휘 감독
 한다.
1. 위원장 부재시 2의무를
 제위 리에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시험 실시 에 따른 준비 및
 시험장을 관리하며 관계 직권
 을 지휘 감독 한다.
1. 출제 및 채점이 책임진다.
2. 과목장 2명씩으로 한다.
- 3.
1. 출제 및 채점이 책임을 진다.
1. 시험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

4. 학과 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으로 하고 6개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9점 이하인 과목은 무제로 한다.

- 4) 원과목 만점 100점 6과목 600점(총점)
- 5) 합격 점수 360점 이상(총점)

14. 합격증 교부

가. 합격자에 대해서는 소정 서식이 의한 합격증을 69.12.1 ~ 69.12.5 까지 당시 보건과에서 교부한다.

15. 시험 위원 사례금

학과 시험 위원 및 시험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전도 자급에 의하여 지급한다.

16. 공고 방법

가. 다음 공고안 에 의거 공고 하고 소요 예산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여야 함.

4) 공고료

세계 중요 일간지 1개 24의 일간신문 (의견) 에 공고 한다. (예산 관계로 1개 사만 한)

7. 예산 계획

가. 시험 예산액

- 4) 원금 200,000 원정
- 5) 산출기초

면허수수료

(1) 600,000원

(2) 응시자 1,500명 600명 합격비

(3) 1인당 1,000원

= 1,600,000

응시수수료 { 이응시 800 x 200
비응시 700 x 200 = 140,000

나. 소요 경비

4) 소요 경비 집행은 우선 공고 후 응시자 수를

17-10

파악한 후 확정 소모액을 기초 산출하여 집행한다.
(별도 집계)

(2) 관. 신운 공교비 우선 다음과 같이 예산
범위 내 예산 집행 한다.

- 차. 신운 공교비 지출 범위
- 1) 예산 비목 모건비 모건잔외비 커명관외비
수주료외수선비
 - 2) 관. ~~신운~~ ~~공교비~~ ~~지출~~ ~~범위~~
 - 3) 신운 ~~공교비~~

종별	금액	잔액	신운지출	고
신운공교비	43,200	10,100	2천X120원X1800 =43200	예산한계로 위급시 시이반 공교비

무심사	사무과장	합계비서	계장	인
1969. 10. 20	1969. 10. 20	1969. 10. 20	1969. 10. 20	1969. 10. 20

18. 공교 (안)
시운 특별시 공교 비
1969년도 이영사 및 비영사 자적 시험 실시
시운 특별시 시행 69년도 이영사 자적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1. 시험 실시 및 장소
 2. 이영사 자적 시험
 - 1) 학과 시험 실시 1969. 10. 5 09:00 ~ 16:00 까지
총괄 필답 26 총괄제학의외필답
 - 2) 실기 시험 실시 1969. 10. 20 - 10. 22 (이영)
총괄 필답 128 (이영) ~~총괄제학의외필답~~
- (학내시험장설치안함)

나. 미용사 자격 시험

1) 작위 시험 일시 69.10.5 오후 1:00 ~ 5:00 까지

장소 중구 일동 222-26 용위학교 5층 501호

2) 작위 시험 일시 69.10.29 오후 1:00 ~ 5:00

장소 중구 남산동 128-8 용위학교 5층 501호

(학내시험장정외에 한함)

2. 응시 원서 접수 기관 및 접수 장소

가. 응시 원서 접수

1969. 9. 15 부터 9. 28 까지 (공휴일 제외)

나. 접수 장소

장시 보건과

3. 시험 과목

종 별	미용사 학과 시험	미용사 학과 시험
후과 시험	1. 귀염법 2. 손수법 3. 공중위생학 4. 성의해부학 (피부해부학) 5. 윤곽 및 화장 (화장을 할 때의 이론에 관한 부분) 6. 미용 이론	1. 귀염법 2. 손수법 3. 공중위생학 4. 성의해부학 (피부해부학) 5. 윤곽 및 화장 (화장을 할 때의 이론에 관한 부분) 6. 미용 이론
실기 시험	1. 주발, 면도 (기초기술) 2. 손수약의 취급 3. 위생상의 조치	1. 다이링, 샷원, 화장 (기초기술) 2. 손수약의 취급 3. 위생상의 조치

4. 응시 자격

가. 국민학교 이상의 학위를 가지지 아니한 실업 강습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이 미용사 자격 시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미용사 학원에서 6개월

19-2

이상의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영일 제형허가를 받은
이.비.용 예소 예어 1년 이상 종사 한다.

나. 국민 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나 영일도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다.

다. 원기 시험 ~~은~~ 69년 11월 시험 이.비.용사 자격
시험 규약 시험에 합격 한자로 한다.

5. 응시 절차 및 준비 서류

㉚.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 원서와 관계 준비 서류
를 준비 하여 응시원서 접수 기일까지 응시 보건의
에 접수 하여야 한다.

㉛. 응시 원서 준비 서류 (이.비.용사시험규약제15조)

1. 응시 원서 1통 (소정 서식)

2. 이력서 1통

3. 보건소장 발행의 건강 진단서 1통

4. 졸업원 확인증 1통 (소정 서식)

5. 학원 등록차에 한하여는 등록 확인증 1통 (소정 서식)

6. 사진 (반명함판으로 나 크는 제출된 6개씩이며
앞면으로 촬영한 것) 4매

7. 3회 구분 또는 주민 등록 ~~증~~ 1통

8. 수수료 200 원 (서울시 수납증서로 납부)

6. 합격자 및 불합격 결정 및 불합격 방법

㉜. 학원 시험 불합격 1969. 10. 19 (예정)

㉝. 최종 합격자
1969. 11. 5.

당시 주점에서의 판매가 증가하여 판매량을 늘려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하였다

가. 기업주의 사랑

가. 당시 정부는 국외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 (침묵
또는 잉크 및 만년필) 과 등의 시험에 수요가
이 미용기구를 수집하고 시험 당일 야간까지
시험 장소에 집합하여 시험 참여관의 지시
를 받을 것 (과점 시험 시험을 통과함)

나. 기업주의 사랑은 당시 보리파의 주주 보편
의생과에 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1969. 9.

서울특별시장

응시지원서

본적
주소

성명

서기 19 년 월 일생

이번 귀시도에서 시행하는 미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별첨 관계 서류 첨부하여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서울특별시강북구

첨부서류

1. 이력서 1 통
2. 건강진단서 (보건소 발행)
3. 종업원 확인증 (작성된 수료라는 수료확인증 포함)
4. 사진 4매
5. 자격증분 이력서 주민등록증 1 통
6. 수수료 200 원 (서울특별시 수료증)

138

19-15

130

수료 확인증

복위
심명

서기 19 년 월 일

위 사람은 학원에서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인턴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학자임을 확인
함.

년. 월 일

학원장 (인)

서울특별시장 (인)

137

~~137~~

19-16

131

종업취업인증

본국
주소
성명

서기 19 년 월 일

위 사람은 다음 업소에서 보류된 근로에 종사한
사실이 증명된 신고에 장에 기재에 취업되었음
으로 이에 증명함

년 월 일

보건국장

이

기

영업소 의 노 재 리	업 소 명	업 주 명	종사 기간	비고